# '22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계획

2022. 3.



# 관계부처 합동,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인 계획

# │ 추진 배경

- □ 최근, 어린이통학버스(이하 "통학버스")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점검 건급히 추진(경찰청 주관)
  - \* 행안부, 교육부, 국토부, 복지부, 문체부, 경찰청 등 6개 기관
  - \*\* '20. 1월 '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'에 따라 '24년까지 연 2회 관계기관 합동.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협의
  - 최근('22. 1월), 학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 승하차 보호를 위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하차 중인 어린이 사망 사고 발생(제주, 여, 8세)
  - 매년 상·하반기 관계기관 합동,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함 에도 교통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
# 세부 확인계획

Ш

- □ 기 간: '22. 3. 29.(화) 09:00 ~ 13:00
- □ **장 소** : 완주 테니스장 주차장(완주군청 뒤)
  - ※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. 지역 실정에 맞게 일정 조정 가능

# □ 확인 대상

# < 어린이통학버스 신고·접수증 발부 현황('22. 3월 기준) >

순	학원(교습소)명	차량대수	차량번호	비고
1	이스턴학원	1	73주5253	
2	리틀캔버스미술학원	1	72로2764	
3	all al Tallal Ol	1	71저0581	
4	에이콘어학원	1	72로2789	
5	힘찬바둑학원	1	787}9534	
6	뮤즈음악학원	1	77두7460	
7	발레리나무용학원	1	78머6767	
8	레몬피아노학원	1	71저0597	
9		1	73거6677	
10	동양학원	1	76루6167	
	이아이이고려대학교국제어학원			
11	전주혁신캠퍼스학원	1	75다6090	
12	이지영어학원	1	79거6166	
13	미래음악학원	1	74오2071	
14	편아트스토리학원	1	70버8367	
15	송앤송피아노학원	1	79더6639	
16	예원음악학원	1	787}9507	
17	은파피아노학원	1	74로9873	
18	모짜르트음악학원	1	71나5835	
19	한양무용예술학원	1	79어8553	
20		1	76보4938	
21	삼례지앤비어학원	1	70거6140	
22	필아트색을먹는달팽이미술학원	1	71나5937	
23	지엔비어학원	1	78나1256	
24	이스턴영어봉동점명문학원	1	71러6371	
25	하늘을나는그림책전주혁신점학원	1	72더2336	
26	하얀세상혁신캠퍼스미술학원	1	79보8081	
27	프라임수학학원	1	70나9447	
28	숲속의피아노음악학원	1	72모8677	
29	청담입시학원	1	72구2355	
30	조이풀잉글리쉬학원	1	79조3010	
31	비욘드 어드밴스트 워릭어학원	1	70박}2881	
32	시수(SISU)어학원	1 1	70바2437 76버5731	
34	 ^\구(3\30)이익천 주다피아노교습소	1	76고2344	
35	 북몽키스어학원	1	727 <del>}</del> 4793	
36	 윤댄스플레이스학원	1	727年733 79 <b>世</b> 8873	
30		36대	70-10070	

## □ 확인반 편성

구 분	기관명	담당부서	직급	성명
	교육(지원)청	통학차량 담당(학원)	주무관	박선영
확인반	교통안전공단	자동차검사소	차장	정용철
작인반 	경찰서	완주경찰서	경장	최기준
	지자체	안전 담당	주무관	임한나

## □ 중점확인 항목

- ① **통학버스 신고**(법 제52조 제1항)
  -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
- ② **통학버스 요건 구비**(법 제52조 제3항)
  -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\*에서 정한 구조, 어린이보호표지, 보험, 소유관계 등을 확인(붙임5)
    - \*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  - (어린이보호표지)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,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
    - ※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만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
  - (보험)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
- ③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(법 제53조 제7항)
  -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·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\*의 장에게 제출
    - \* 시설 인·허가권자, 예) 학원 → 교육감(교육지원청교육장)
- ④ **운영자·운전자·동승자 안전교육**(법 제53조의3)
  - 통학버스 운영자·운전자·동승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

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

- 신규교육은 통학버스 운영 및 운전하기 전 이수,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 이수

## ⑤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(school.siff.or.kr) 활용 여부

안전운행기록 작성제출 방식을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제출방식으로 지향

## □ 안전확인 결과

○ 현장점검 후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,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·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

# 행정사항

## □ 협조사항

Ш

### ○ 확인반

- 원활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협조
- 한국교통안전공단: 구조장치 및 각종 결함여부 현장점검
- 경찰서: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현황 자료 제공, 현장점검시 관련 법규 교육 실시
- 지자체: 완주 테니스장 주차장 장소 협조 및 현장점검 지원

# ○ 학원 및 교습소 차량

- 학원 및 교습소 통학차량 담당은 안내 일정 확인후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09:00까지 점검 장소 도착 및 준비
- 통학차량 운영학원 현장 확인 시 준비 서류

구 분	내 용	비고
어린이통학버스 확인표	붙임1	
통학버스차량정보	자동차등록증 사본,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	
차량안전 내 비치서류	통학버스신고필증, 운전자안전교육이수중, 버스운전자 자격증, 통학버스 교통안전 점검 매뉴얼, 비상연락망, 승 차대상 학생 명단 및 연락처	
각종 안전운행 일지	차량운행일지, 통학버스 이용학생 승·하차 확인표 안전운행기록 작성 일지	
안전교육 증빙자료	운영자, 운전자, 동승보호자 교육이수확인증 사본 학생 대상 안전수칙 교육 실적	

# - 개선이 필요한 사항(부적합)은 '22년 하반기 합동 확인 시 재확인

붙임: 1. 어린이통학버스 확인표(시설별, 차량별)

- 2.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
- 3. 어린이통학버스 확인 체크리스트
- 4. 정기·종합검사 시 판정기준 및 법적근거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
- 5. 어린이통학차량 준수 사항

# 붙임1

# 어린이통학버스 확인표(학원별, 차량별)

①학원명		○○학원				②차량구	_ □ 직영	③통학버스	□ 신고	
Ū-	120	(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111)			Ø^IST	□ 전세	354U=	□ 미신고		
<u> ه</u> ـــ	나동차	차량번호	-	종	차명	연식	승차정원	자동차	등록 소유자	
등록정보		전북70다0000	<ul><li>□ 소형</li><li>□ 대형</li></ul>	□ 중형,	이-에어로타운	2020년	. 34명	(유)	)()여행사	
⑤차량보험 대인배상 □ 7 가입여부 (배상 I, II)		□ 가입	가입 🗆 미가입		대물배상 □ 가입 (1사고당 보상한		□ 미가입 당한도 금액:			
_	승인원  평균)	총 00 명【	영아(	명) 유아(	명), 초(	명), 중(	명), 고( 명	g), 전공과(	명), 1	
⑦ 안전		전체좌석안전띠 (승차정원기준)		총 개 (정상: 불량: 미설치: )			어린이,영유아 전용 좌석안전띠		개 🗆 미설치	
	벨트	유아보호용장구 (카시트 등)	L □ 설	□ 설치(총 개) □ 차량내보관(총			□ 미설치 ※ 좌석	안전띠에 탈부착	전띠에 탈부착용	
		황색 도색	□황	색 🗆 기타		정	지표시장치	□ 설치 □	] 미설치 🗌 불량	
		승강구 (보조발판)	설	치 🗆 미설	치 □ 불량	상단	표시등(앞뒤)	□ 설치 □	] 미설치 🗌 불량	
	8 안전	창유리선팅	□적	□ 적합 □ 부적합		광각실	외후사경(좌,우)	□ 설치 □	] 미설치 □ 불량	
차 량	장치	CHEICHEOTAL			적합 □ 부적합 적합 □ 부적합	동승보호자 탑승 표시		□ 탑승표시	시 □ 탑승미표시	
안		후방영상장치	□ 설	치 □ 미설	치 □ 불량		고음 발생장치	□ 설치 □	□ 미설치 □ 불량	
전		하차확인장치	□설	치 □ 미설	치 □ 불량	운	행기록장치	□ 설치 □	] 미설치 □ 불량	
	9	소화기(2개)	ㅁ비	□ 비치(총 개) □ 미비치		비상탈출망치(4개)		□ 비치(총	개) 🗆 미비치	
	비치 물품	구급상자	<b>당자</b> □ 비치 □ 미비치			Ē	금연스티커	□ 부착	□ 미부착	
	10	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[자동차 앞면 창유리 우측(조수석) 상단]			□ 비치 □ 미비치(□ 시정조치 □ 과태료부과)					
	비치 서류	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		등 버스운전자 자격증		통학버스 교통안전 점검 매뉴얼		_	승차학생 (명단, 비상연락망, 연락처)	
		□ 비치 □		ᆸᆈᅔ		□ 비치 □ 미비치		ᆸᆸ	🗆 미비치	
		0		안전지도사) 탑승 여부		□ 탑승(탑승자 성명:		, .	) 🗆 미탑승	
운형	방안전	①차량운행 <sup>9</sup>				3		<mark>∤생 승·하차 확인표</mark>		
			미작성		성 □ 미작성 <mark>선자 안전교육</mark>	<b>⊕</b> ೯ <b>ヘ</b> ⊦	□ 작성 <mark>보호자 안전교육</mark>	□ 미작성	일다 아저그 오	
아자	선교육	⑤운영자 안전 □ 이 수 □			수 🗆 미이수		<mark>으자 인진교육</mark> 수 □ 미이수		<b>대상 안전교육</b> □ 미실시	
	7	(이수예정일:)				니 이 (이수예정			의 기관계 일 2022. 00. 00.]	
			.템(schoolbus.ssif.or.kr) 등록 여부							
지적형	항목 및		-		I		· · ·			
조치	기사항									
확인자 통학버스 운영기관						J    U- U.				
001	교육(지운		-	성명	(서명)	○○학원			명 홍길 <del>동</del> (서명)	
$\bigcirc\bigcirc$	교육(지운	<u>l</u> )청 직		성명	(서명)					
007	경찰서			성명	(서명)					

#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

구 분	위 반 내 용	처벌기준	
	▶ 미신고 운행(법 제52조제1항)		
	▶ 통학버스의 요건*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 영자(제52조제3항)	과태료 30만원	
통학버스 운영자	▶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(법 제53조제3항)	형사처벌	
	►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(제53조 제6항)	(30만원 이하)	
	▶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(법 제52조제2항)	과태료 3만원	
	▶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(법 제53조제1항)		
	►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(법 제53조제2항)	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(승합차 기준) 형사처벌 (30만원 이하) 벌점30점	
통학버스 운전자	►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·하차 시 자동 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(제53조의5) ※ 2022. 11. 26.까지 적용		
	▶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(법 제53조제4항)		
	▶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(법 제53조제5항)		
	▶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(법 제53조제2항)	과태료 6만원	
교육	▶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(법 제53조의3) ※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	과태료 8만원 (교육감 또는	
이수	▶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(제53조 제7항)	지자체장이 부과)	
OIHL	►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 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(법 제51조제1항)	범칙금 승합자동차등 (10만원) 승용자동차등	
일반 운전자	►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시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(법 제51조제2항)	(9만원) 이륜자동차등 (6만원)	
	►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 지르기 금지(법 제51조제3항)	※ 벌점 30점	

# 붙임3

# 어린이통학버스 확인 체크리스트

# ※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(2021.5.11.)

순	항 목	로 내 용		사진
1	<b>정 의</b> <제2조 제32호>	- 도로교통법(제2조 제23호)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	′08.01.14.~	-
2	<b>색 상</b> <제19조 제8항>	- 황색(스포일러 포함 / 천정에어컨, 몰딩 제외)	1997.08.25.~	
3	<b>어린이 보호표지</b> <제19조 제9항>	<ul> <li>- 앞 : 우측 상단(150mm*400mm) / 뒤 : 중앙하단(200mm*500mm)</li> <li>- 1mm 이상 아크릴, 청색 바탕에 노란색글씨, 탈부착형</li> </ul>	1997.08.25.~	
4	<b>정지표시장치</b> <제19조 제10항>	-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· 튜닝한 자동차 -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-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설치 가능	튜닝: '14.2.21.~ 제작: '15.1.1.~	(에트이 정치 (에비
		- 가로·세로 각각 27cm 이상 -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 간 거리 46cm 이상	'19.12.31.까지	
5	<b>좌석</b> <제25조 제2항>	- 좌석규격: 가로 30cm, 세로41.4cm 이상 - 등받이: 71cm 이상(머리지지대 포함) - 좌석간 거리: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	′20.1.1.~	AIR SHOULD
6	<b>접이식 좌석</b> <제25조의2>	- 외부에서 접이식좌석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	1999.02.19.~	
7	<b>좌석 안전 띠</b> <제27조 제6항>	-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	1997.08.25.~	과서먼전의 설치 및 자동산의
8	어린이보호용 <b>좌석부착장치</b> <제27조의2>	<ul><li>- 승용자동차에 설치, 2곳 이상 좌석에 설치(2열에 최소 1곳)</li><li>-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</li></ul>	′10.1.15.~	ISO FIX
9	<b>승강구</b> <제29조 제1항 제4호>	- 1단 : 높이 30cm 이하, 가로-승강구 유효 너비 80% 이상, 세로 - 20cm 이상 - 2단 : 높이 20cm 이하(15인승 이하는 25 cm 이하)	가로·세로 너비 기준은 '11.08.31.이전· 이후 상이	승강구 발판높이 및 규격 준수

순	항 목	내 용	적용시기		사진
10	<b>표시등</b> <제48조 제4항>	<ul> <li>- 안쪽 황색 (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)</li> <li>- 바깥쪽 적색 (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)</li> <li>- 황색, 적색 동시점멸 금지</li> </ul>	'09.06.09.~ (개정-제5호 각목)		09 00
11	<b>간접시계장치</b> <제50조 제2~3항>	- 좌·우 광각 후사경 설치 -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 시계장치 설치 (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)	′17.01.09.~		
12	후방보행자	- 후방영상장치 : 관측영역 조건 존재(규칙 참고)	.′14.2.21.∼ 택1	'19.7.1 둘 다 설치	#928A 9/88A
12	<b>안전 장치</b> <제53조의2>	- 후진경고음 발생장치: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(보행자용) - 접근경고음 발생장치: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(운전자용)	설치 선택		
13	<b>하차확인장</b> <b>치</b> <제53조의4>	<ul> <li>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(경적)・표시등 (비상등) 작동</li> <li>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</li> <li>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,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, 안전벨 스위치 연동,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</li> <li>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 시 60 dB(A) 이상</li> </ul>	'19.4.17. 시행 (기존차량도 의무설치)		
14	<b>최고속도</b> 제 <b>한장치</b> <제54조 제2항>	-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· 튜닝한 자동차 - 승합자동차인 경우,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	′19.11.15.~		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
15	<b>운행기록장</b> 치 <제56조> 교통안전법 제55조	<ul><li>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</li><li>설치 및 정상작동여부(전원, 속도, rpm 등) 확인</li></ul>	'21.1.1. <sup>~</sup> (시행일 이전 신고·운영 중인 차량은 23.1.1.부터)		'2021년 1월 1일'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운행기록전치의 설치 및 작용상태 검사가 시방됩니다.
16	<b>창유리 썬팅</b> <제94조 제3항>	-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% 이상	'21.4.17. 시행 (기존차량도 적용)		2021년 4월 17일7부터 이런이(순송용 송합기동화의 모든 항공리에 대하여 기시원선무과을 당시가 서행되니다.

## 붙임4

# 정기 · 종합검사 시 판정기준 및 법적근거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

### O 색상

- 색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합 〈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〉

#### Ο 표시등

- 미설치(제거) 또는 등광색이 상이한 경우 부적합(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>
- 설치상태(파손, 조사각도 등)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#### O 어린이 보호표지

- 미설치 또는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

#### O 정지표시장치

- 미설치(제거) 시 부적합(기준일자 확인) 〈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7호다목〉
-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#### O 승강구

-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

#### 좌석

- 좌석의 임의변경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**부적합** <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4호>

### O 좌석안전띠

- 제거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〈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5호〉

### O 간접시계장치

-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#### O 후방보행자 안전장치

-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권고

### O 하차확인장치

- 미설치, 임의개조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**부적합** 〈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7호〉
- 성능확인 당시에 신고된 작동상태(참고자료 참고)와 상이한 경우에는, 장치의 성능·기능·목적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판정 및 검사정책처로 해당 내용 통보(수검자에게 성능확인내용과 작동상태가 다름을 구두 안내)

#### O 최고속도 제한장치

- 미설치, 임의조작 등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 〈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〉

#### O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

-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통한 측정 결과, 70%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**부적합** 

### O 운행기록장치

- 여객사업용 자동차 또는 21.1.1.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자동차는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**부적합** 〈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3호〉
- '21.1.1 이전에 신고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미설치 시 시정권고 및 '22.12.31.까지 장착하도록 안내(이미 장착한 경우, 작동상태 확인)

# 어린이통학차량 준수 사항

#### 안전교육

[도로교통법] 53조의3, 시행령 제31조의2, 시행규칙 제37조의2 운영자와 운전자는 운영 또는 운전 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,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\*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됨 ▶ 직전 안전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.1.~12.31.사이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▶ 운영자 안전교육 확인증은 시설 내부의 잘보이는 곳에 비치 ▶ 운영자 안전교육 확인증은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비치

# 어린이통학차량

정지표시장치

좌측 옆면 앞쪽 1개,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19조

좌우에 설치

광각실외후사경 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50조

[도로교통법] 제52조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5조, 제37조

운행 전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

- 신고증명서(필증)는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 부착 ▶ 교통사고 피해 전액 배상 보험 또는 공제조함 가입
- \* 구미시규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신고서
- 국교 당기인가 연고자 모든 국권 당독인고자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▶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 종료된 경우 신고필증은 관할 경찰서에 반는

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19조



[국민건강진흥법] 제9조, 시행규칙 제6조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

###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

[도로교통법 시행령] 제28조 앞면 창유리: 70%미만, 운전석 좌우: 40%미만

### 비상탈출용 장구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30조 제②항 창문규격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는 차실안에 제공용 경단파크 기준에 대한 스시중시에는 시골인에 비상탈출용 장구를 <mark>수개 이상 설치</mark>히야하며,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함

#### 차령

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 제84조, 시행령 제40조, 시행규칙 제103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은 9년이며, 안전성요건이 충족되면 2년 연장 가능

#### 어린이 보호표지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19조 앞과 뒤에 어린이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게 해야함

- ▶ 바탕: 청색, 글씨: 노란색, 두께 1mm이상 아크릴, 글씨: 고딕체
- ▶ 앞면: 400X150. 뒷면: 500X200

[도로교통법 시행령] 제31조

앞면 창유리 우측상단,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 [운행시에만]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48조

앞면과 뒷면 2개의 적색, 2개의 황색 또는 호박색표시등 설치 (<mark>적,황,황,적)</mark>

- ▶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: 황색 또는 호박색 표시등 점멸
- ▶ 어린이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: 적색 표시등 점멸
- ▶ 출발하기 위해 승가구가 닫혔을 때: 황색 또는 호박색 표시등 점멸 (이때, 적색과 황색 또는 호박색 표시등이 동시 점멸되지 않을 것)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57조 승차정원 7인 이상: 능력단위 1이상 1개 이상 승합자동차

- 11인 이상: 운전석 또는 조수석 주위에 1개 이상
- 력단위 1이상 2개 이상
- ▶ 36인 이상: 능력단위 3이상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 1개 이상

# 운전자, 운영자

[도로교통법] 제53조

- ▶ 운전자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한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 내릴 때에는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차 화이 흐 충박
- ▶ 운영자는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함 (교직원, 보육교직원, 강사 등) ▶ 동승보호자는 승하차시 먼저 내려서
-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고,

운행중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








안전벡 동작감지센서 좌석확인벨

차량 내 안전장치(안절벨, 동작감지센서, 좌석확인벨) 설치 및 신규계약 차량의 경우 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계약

### 후방확인을 위한 장치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53조의2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

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여부를 알리는

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

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 제81조, 시행규칙 제103조, 제103조의2, 제104조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(운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)으로 교육목적으로 운송할 경우,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
▶ 허가기간 3년 이내(갱신 가능), 차량 옆면에 시설명 표시, 종합보험가입



#### 승강구(보조발판)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29조

제1단 발판높이: 30cm 이하

제2단 발판높이: 20cm이하(단, 15인승 이하는 25cm이하 가능)

[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] 제25조의2

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해 설치 가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함

- ▶ 통상 승강구에서 가까운 1개의 접이식 좌석만 가능
- ▶ 구조변경으로 탈착한 접이식좌석 자리에는 팔걸이를 설치해야 함
- \*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운행 시 탈착 후 팔걸이를 설치해야 함